

지정사업장 지정(변경)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	처리기간	25일
신 청 인	성 명 국문 (법인명)	전 화		
	영문	팩 스		
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홈페이지		
	주 소 국문			
	영문			
사 업 장 주 소				
지정대상	형식승인증서번호	품 명	규 격	형 식
비 고				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60조의2제1항 및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([]건조, []제조 []정비)사업장의 지정(변경승인)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. 사업장의 연혁·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.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. 지정대상물건의 건조·제조에 관한 규정(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) 1)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2)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3) 건조·제조과정 4) 품질관리 5) 시험과 검사체계 라.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(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) 1)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)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)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, 4) 조립 후의 조정방법 마.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.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가.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나. 지정사업장 지정서	수수료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별표 20 제3호에 따름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